### <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비공개 처리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
- 2. <u>가맹계약을 체결</u>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u>본 서</u> 류가 아닌 정보공개서 원본을 받아 보고, 14일의 숙고기간 동안 그 내용을 검토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다.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 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 령하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 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 습니다.

### 서울특별시장



# 정 보 공 개 서

1	가맹본부	<del>㈜</del> 브랜드라이브코리아			
2	영업표지	크레이지 빙수			
3	가맹점명	크레이지 빙수점_			
4	계약 유형	신규 🗆 갱신 🗆 양수도 🗆			
5	가맹거래사 또는 변호사 자문일	년 월 일			
6	정보공개서,인근가맹점현황문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일	년 월 일			
7	가맹계약 체결일	년 월 일			
8	가맹금 예치일	년 월 일 예정			

# 가맹본사용 □ 가맹점 사업자용 □

가맹본부 소재지 서울특별시 성동구 무학봉16길 26-9, 지층(행당동)			봉16길 26-9, 지층(행당동)
가맹사업부		02-6053-1299 (비공개)	
이메일	이메일 팩스 crazybingsu1@naver.com		0504-372-3158

본 정보공개서 원본의 소유권은 (주)브랜드라이브코리아에 있으며 이를 무단으로 외부에 유출하거나 공개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20230655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2023-05-09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2025-05-18

# 크레이지 빙수 정 보 공 개 서

크레이지 빙수 가맹본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24.09.

####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 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 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 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가맹본부 소재지 서울특별시 성동구 무학봉16길 26-9, 지층(행당동)			
가맹사업부		02-6053-1299	(비공개)
이메일	이메일 팩스 crazybingsu1@naver.com		0504-372-3158

# 목 차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п.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Ⅷ. 교육 • 훈련에 대한 설명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별첨 1 정보공개서/인근가맹점 현황/가맹계약서 제공확인서 (가맹본사보관용)]

별첨 2 정보공개서/인근가맹점 현황/가맹계약서 제공확인서 (가맹점사업자용)]

별첨 3 가맹금 예치신청서

별첨 4 영업지역 설정

####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 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 (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 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 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 경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지		주 소				
	크레이지 빙수		서울특별시 성동구 무학봉16길 26-9, 지층(행당동)				지층(행당동)
브랜드라이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브코리아	2024.05.22		2024.08.01	박승우	(비공개)		0504-372-3158
	법인등록번호 11011		1-8954186 사업자등록		릒번호	722-	-86-03284

####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특수관계인 중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 경영 경험이 있는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상호/이름	영업표지	주 소			
	㈜크레이지빙수 X오늘도		서울특별시 성동-	구 무학봉16길 26	5-9, 지층(행당동)	
대표	지포글포 김볶만 플레그쉽스토어	오늘도 김볶만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글데그룹으로이 /박승우		박승우	(비공개)	0504-372-3158	
			서울특별시 성동-	구 무학봉16길 26	-9, 지층(행당동)	
대표	㈜브랜드라이브 코리아/박승우	크레이지빙수외 1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_	박승우	(비공개)	0504-372-3158	

####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바로 전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합병(다른 기업의 가맹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있습니다.

인수 • 합병 여부	기업명	영업표지	인수 • 합병일	주 소	대표자
가맹본부가 다른	크레이지빙 수 회기점	크레이지빙수	2024.09.3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136, 2층 (전농동)	최은혜
기업의 가맹사업 일부를 인수함	크레이지빙 수X오늘도 김볶만 플래그쉽스 토어	오늘도김볶만	2024.09.30	서울특별시성동구무학 봉16길 26-9,1층 (행당동)	박승우

###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 (앞으로 크레이지 빙수라 합니다)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크레이지 빙수	빙수 / 후르츠 / 크로플 /
상 호	크레이지 빙수 OO점	우동/볶음밥/오므라이스 당사는 보통 해당 지역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표(서비스표)	크레이지빙수 CRAZY BINGSU	등록번호: 40-2066152 2023.08.11. 등록
광 고		
그 밖의 영업표지	CHASY BINGSU	

####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2년	-	-	-	-	-	-
2023년	-	-	-	-	-	-
2024년	24,136	30,604	-6,468	7,752	-8,479	-8,468

- \* 당사는 2024년 5월에 설립되어서 그 이전 연도에 대해 표시할 재무정보가 없습니다.
- 2)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 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 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 당사는 2024년 5월에 설립되어서 그 이전 연도에 대해 표시할 재무정보가 없습니다.
-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교단에구	ME	2 7TI	기간	직위	담당 업무
	박승우	대표이사	2024.05.22. ~ 현재	㈜ 브랜드라이브코리아	업무 총괄
가맹사업	0 1	기포이게	2024.03.22.	대표이사	8102
관련 임원	박기남	감사	2024.05.22. ~ 현재	㈜ 브랜드라이브코리아	감사 업무
	7/10	급시	2024.03.22. ~ 연제	감사	

####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	수(명)	직원수(명)
시심	상근	비상근	역원구(당)
2024년 12월 31일	1	0	0

####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가맹사업을 경영하였거나 경영하고 있습니다.

관계	상호/이름	구분	기간	사업내용
대표	크레이지빙수X 오늘도 김볶만 플레그쉽 스토어/박승우		2023.03.22.~2024.09.29.	크레이지빙수 (등록번호:20230655) 및 오늘도 김볶만 (등록번호: 20240887)
7L매 보 ㅂ	㈜브랜드라이 브코리아	가맹사업	2024.09.30.~현재	크레이지빙수 (등록번호:20230655)
가맹본부	/박승우	경영	2024.09.30.~현재	오늘도 김볶만 (등록번호:20240887)

####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방수 생태계의 변혁을 일으키는~~ 크레이지 방수!!

명칭	권리내용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출원신청자)	존속기간 만료일 (가맹본부의 사용기간)
크레이지빙수 ©CRAZY BINGSU	계약 내용에 따른 영업 후 대가 수령	2022.02.07. 출원 2023.08.11. 등록	출원번호 40-2022-0022462 등록 번호 40-2066152	박 승 우	2033년 8월11일까지

본 영업표지 지식재산권은 현재 상표 소유자 박승우가 ㈜브랜드라이브코리아 가맹본부에게 상표사용을 승낙 하였으며 (2024년 9월 27일 상표권 사용설정 계약체결) 상표권 설정사용 계약기간은 2024년 09월 30일부터 2033년 08월 11일까지입니다.

위의 지식재산권을 사용하는 방식에 대하여는 당사가 지정한 디자인, 사인물 등의 형태로 사용하여야 하며 당사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형태로 지식재산권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지식재산권을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 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Ⅱ.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1. [크레이지 빙수]를 시작한 날: 2022년 04월 01일

가맹본사 변경 전 종전 가맹본사가 직영점을 시작한 날은 **2022년 04월 1일**이지만 ㈜ 브랜드라이브코리아가 가맹사업을 양수함과 동시에 종전 가맹본사의 직영점은 가맹점으로 전환되어 현재 직영점은 없는 상태입니다.

### 2. [크레이지 빙수] 연혁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 이름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크레이지 빙수 회기점	CAASY	최은혜	2022년 04월 01일 ~ 2024.09.29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136,2층 (전농동)
㈜브랜드라이 브코리아	BINGSU	박승우	2024.09.30. ~ 현재	서울특별시 성동구 무학봉16길 26-9, 지층(행당동)

#### 3. [크레이지 빙수] 업종

영업표지	업종				
크레이지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빙수	기타 외식 (음식점)	빙수 / 후르츠 / 크로플 /			
01	기디 최취 (급취급) 	우동/볶음밥/오므라이스			

####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크레이지 빙수]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지역		2022.12.31	l <b>.</b>		2023.12.31	l <b>.</b>		2024.12.31	l <b>.</b>
시작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2	1	1	5	4	1	12	12	0
서울	2	1	1	3	2	1	4	4	0
부산	-	-	-	1	-	-	-	-	-
대구	-	-	-	-	-	-	1	1	-
인천	-	-	-	-	-	-	-	-	-
광주	-	-	-	-	-	-	-	-	-
대전	-	-	-	1	1	-	1	1	-
울산	-	-	-	-	-	-	-	-	-
세종	-	-	-	-	-	-	_	-	-
경기	-	-	-	1	1	-	3	3	-
강원	-	_	-	-	-	-	2	2	-

### 방수 생태계의 변력을 일으키는~~ 크레이지 방수!!

충북	-	-	-	-	-	-	1	1	-
충남	-	-	-	-	-	-	-	-	-
전북	-	-	-	-	-	-	-	-	-
전남	-	-	-	-	-	-	-	-	-
경북	-	-	-	_	-	-	-	-	-
경남	-	-	-	-	-	-	-	-	-
제주	-	-	-	-	-	-	-	_	-

<sup>\*2024</sup>년 9월 30일 가맹본사 변경에 따라 종전 가맹본부의 직영점은 가맹점으로 전환되었습니다.

#### 5. 바로 전 3년간 크레이지 빙수 가맹점 수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2	0	1	-	-	-	1
2023	1	3	-	-	1	4
2024	4	8	-	-	-	12

6. 크레이지 빙수 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크레이지빙수] 외에도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고 있는 가맹사업의 바로 전 3년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사능/이르	영업표지	정보공개서	어조	가맹	점/직영점의	의 수	
TE	상호/이름	8 립표시	등록번호	업종	김승	2022.12.31	2023.12.31	2024.12.31
가맹본부	㈜브랜드라 이브코리아 /박승우	오늘도 김볶만	20240887	한식	-	0/1	4/1	

<sup>\*</sup>위 표에서 2023년말까지 가맹점 및 직영점수는 가맹본부 변경전 종전 가맹본부 운영기간 동안의 수치입니다. 2024년 9월 30일 가맹본부 변경후 종전 개인사업자 (박승우 대표) 명의의 직영점은 ㈜ 브랜드라이브코리아의 가맹점으로 전환되었습니다.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	)24년 가맹	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 매출액		
	2024년말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 평		연간 :		비고
지역				매출액(	<u>상한)</u>	매출액(	하한)	
	가맹점수	연간 평균	면적	상한	면적	하한	면적	
		매출액	3.3m²당	011	3.3m²당	의단	3.3m²당	
전체	12	244,667	21,579	413,706	41,371	14,090	2,680	12곳 산정
서울	4	해당 없음	-	-	-	-	-	5곳 미만
부산	-	해당 없음	ı	-	-	-	-	-
대구	1	해당 없음	-	-	-	-	-	5곳 미만
인천	-	해당 없음	-	-	-	-	-	-
광주	-	해당 없음	-	-	-	-	-	-
대전	1	해당 없음	-	-	-	-	-	5곳 미만
울산	-	해당 없음	ı	-	-	-	-	-
세종	-	해당 없음	ı	-	-	-	-	-
경기	3	해당 없음	ı	-	-	-	-	5곳 미만
강원	2	해당 없음	-	-	-	-	-	5곳 미만
충북	1	해당 없음	-	-	-	-	-	5곳 미만
충남	-	해당 없음	-	-	-	-	-	-
전북	-	해당 없음	-	-	-	-	-	-
전남	-	해당 없음	-	-	-	-	-	-
경북	-	해당 없음	-	-	-	-	-	-
경남	-	해당 없음	-	-	-	-	-	-
제주	-	해당 없음	-	-	-	-	-	-

- ▶ 상기 연간 평규 매출액은 가맹점사업자의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을 기준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 ▶ 6개월 이상 영업한 가맹점의 매출만을 연 환산하여 연간 평균 산출에 사용하였음.
- ▶ 매출액은 가맹점사업자별로 물품 공급액, 시장상황, 점주의 노력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에 나타난 매출액이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미래수입과 같지는 않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 1항에 따라 당사가 매출액 추정에 사용한 자료는 당사의 본사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방문하여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 8. 크레이지 빙수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4	12	9.6개월 (349일)

####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당사는 크레이지 빙수 가맹점 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지사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10. 광고ㆍ판촉 지출 내역

당사에서 [2024년]에 **크레이지빙수**와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수단	71.71	지출비용(	(단위: 천원, 부가 <i>-</i>	세 미포함)
<b>丁世</b>	구긴	기간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광고. 판촉	구분 불가	2024.01~2024.12	0	0	0

#### 11. 가맹금 예치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주)신한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 지점 또는 부서	주소	전화번호
국민은행	왕십리 지점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410	02-2291-5494
수민단병	314 A1	센트라스상가 L동 2층 201호	02-2291-3494

자세한 예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는 가맹금을 가맹계약 체결과 함께 가맹본사가 교부한 가맹금 예치신청서와 함께 (주)신한은행에 [계약 체결 당일 까지] 예치신청 하여야 합니다.

예치방법은 (주)신한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를 다운받아 설치한 후 "예치 서비스"를 클릭한 다음 **크레이지 빙수**를 찾아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가맹금 예치방법은 각 금융기관별로 상이하며 금융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정확한 절차는 해당 금융기관을 통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또한 (주)신한은행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 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 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맹금 예치제를 운영하고 있기에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 皿. 가맹본부와 그임원의 법 위반 사실

####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로 받은 유죄의확정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 IV .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크레이지 빙수**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보증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15,300				
가맹비	8,800	가맹계약과 동시	가맹사업법에 따라 일부 반환 될 수 있음	가맹점오픈을 위하여 소멸되는 비용	-가입비 -개점 인력지원 및 개점준비 -점포실사 -가맹점 운영을 위한 노하우 제공
교육비	5,500	가맹계약과 동시	가맹사업법에 따라 일부 반환 될 수 있음	교육이 시작 된 시점 이후	-개점 전 조리/ 서비스/ 운영/개점세팅비
거래보증금	1,000	가맹계약과 동시	가맹사업법에 따라 일부 반환 될 수 있음	가맹계약 위반시	

2)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없음)

	구분	금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고
	총계	1,000	가맹계약과 동시	가맹계약에 의거	
	거래보증금	1,000	가맹계약과 동시	가맹계약에 의거	
ĺ	담보목적물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보증금은 계약 종료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상품, 원.부자재 대금 등 가맹계약서상의 이행 및 채무 또는 손해배상금액이 있는 경우 보증금과 상계하여 처리합니다.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합계	15,300
가맹비	8,800
교육비	5,500
거래보증금	1,000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품목은 [20]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면적	지급기한	반환조건	비고
			3.3㎡당금액			
총계	-	30,140	3,014	-	-	-
인테리어 (점포 내장공사)	협력업체	33m²(10평)기준 16,500	1.050	청이		
간판	협력업체	(철거, 전기승압, 가스, 화장실공사, 덕트, 소방, 냉난방 등 별도)	1,650	협의		
주방설비 및 집기	협력업체 / 협력업체/협 력업체 / 협력업체 외 외부업체	9,790	979	협의	공사, 발주 전 계약취소	
기타설비	협력업체 / 협력업체/협 력업체 / 협력업체 외 외부업체	2,750	275	협의		
최초 공급상품	가맹본부	1,100	110	협의		
무선단말기	점주 자율	협의		협의		
배달SW 및 프린터기	-	월 사용료 및 임대료 별도	-	협의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①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 할 경우, 당사의 설계 및 감리대가로 3.3m²마다 일금 일십육만오천원(₩165,000)정 <부가세 포함>을 당사에 별도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위 표의 면적 3.3 m'당 금액은 기준면적을 3.3m'로 나눈 금액에 불과하며, 기준면적 보다 크거나 작을 경우 정률로 금액이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않습니다.
- ②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향후 가맹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금액 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③ 상기 비용 이외에 설비의 품질, 선택사항에 대한 추가 및 점포 건물에 따른 소방시설, 보안시설, 배수, 통신설비, 화장실공사, 인허가, 배수공사, 변경공사, 어닝 등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소요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④ 상기 금액은 상권, 면적, 관련 법령 및 내부 규정의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⑤ 희망가맹예정지가 수도권 이외의 지방인 경우 별도의 경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 ⑥ 자세한 비용은 점포환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계약체결 시 매장실측 후 별도로 제공 안내하고 있습니다.
-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입지선정의 지연으로 인해 영업의 개시가 늦어지는데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당사가 책임 지지 않습니다.

선정주체	선정기준
	1)가맹점사업자의 판단과 책임으로 가맹점의 입지를 조사ㆍ선정하며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기매자 나아기	2)입지선정과 관련하여 가맹본부는 해당지역의 행정구역상의 구분, 상권의 특성, 주요한 근린시설, 업종 특성에 따른 매출성향, 인근 가맹점의 영업지역 등을 고려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조언을 할 수 있다.
가맹점사업자	3)가맹본부가 조언한 경우라도 최종 의사결정은 가맹점사업자가 하며, 가맹점의 매출액이나 수익액은 가맹점사업자의 관리능력이나 여건의 변화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다.
	4)가맹점사업자의 가맹점 개점에 관련된 인·허가 사항의 준비나 상가규약 등의 확인은 가맹점사업자의 책임으로 한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ㆍ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기하다시티시	당사의 경영방침을 준수할 것	만19세 이상일 것
종업원	특별한 기준 없음	만18세 이상일 것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8) 당사는 가맹금 분납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가맹점사업자는 일시금으로 가맹금을 포함한 개설비용을 당사에 지급하여야 하나 분납여부 및 비율에 대해당사와 협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

####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그애	금액 지급기한 '	반환조건	반환될 수	비고
十世	718416	D - T	시티시킨	시티기한 [단천보신]		0175
로열티	가맹본부	포스순매출액의 0.9%	익월 15일	-	-	-
리스료	해당 없음	-	-	-	-	-
광고 분담금	가맹본부	가맹본부 50% 가맹점사업자50%	광고 15일 전까지	광고 미집행	광고 집행	전체 가맹점 균분하여 납부
판촉분담금	가맹본부	행사에 따라 각 가맹점별로 산정	판촉 15일 전까지	판촉 미집행	판촉 집행	-
교육훈련비	해당 없음	-	-	-	-	-
간판류 임차료	해당 없음	-	-	-	-	-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가맹본부 50% 가맹사업자 50%	디자인 및 인테리어 개발비용은 본사가 부담/각 가맹점내의 가판, 설비변경은 협의하여 부담	협의	미반환	변경설치	부득이한 경우 변경될 수 있으며, 교체비용은 당사자의 귀책사유 등을 고려하여 협의결정
영업지역 보장금	해당 없음	-	-	1	-	-
시설, 각종 기기의 교체.보수비용	가맹본부	협의하여 부담	협의	미반환	변경설치	교체보수 필요시 시설, 기기 등의 내구연수 등을 감안하여 당사 와 협의하여 결

						정
점포환경개선 비용	미지정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협의	-	-	-
POS 사용료	미지정	미정	지정일	미반환	실사용	-
지연이자	가맹본부	15%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	-	대금결제연체시
제조물 책임보험 화재보험	미지정	실비	지정일	미반환	실사용	-

상기 금액은 개략적인 추정치 이며 가맹본사 및 가맹점 사업자의 경영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으므로 이점 양지 하시기 바랍니다.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단위: 천원, %)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 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 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위 내용은 추정금액으로 2024년도에 6개월 이상 운영 가맹점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습니다.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은 추정금액으로 2024년도에 당사가 가맹점사업자에 게 공급한 구입요구품목의 매출액에서 해당 품목의 구매금액 합계를 뺀 차액을 6개월 이 상 운영한 가맹점 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때 6개월 이상 1년 미만의 가맹점의 경우 1년 치로 환산한 금액을 반영했습니다.

따라서 위 금액이 당사의 순수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인건비, 창고임대료, 배송비 등여러 비용을 반영하지 않고 당사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한 구입요구품목의 매출액에서해당 품목의 구매금액 합을 뺀 차액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경우 전년도에 구입하여 금년에 공급하는 부분, 금년에 구입하였으나 아직 공급하지 않은 부분, 자체 생산품목에 대한 차액가맹금 미포함 등으로 인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독 항목	내 용	시기	비고
	당사가 정한 규정 이외의 물품 취급 여		
재고관리	부, 공급품의보관 상태 등 매장 운영 전	분기별 1회	사정에 따라
	반에 대하여 점검 및 감독		변경될 수
실계시기	공급품의 구입과 판매에 관한 회계장부	버기버스팅	있습니다
회계처리 	등 감독	분기별 1회	

####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재합니다)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0~550				
추가 교육비	0~550 범위내에서 협의하여 결정		교육 시작 1일 이전 에 계약 해지	교육 개시후 반 환불가	추가교육 필요시
점포 이전비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당사는 계약종료 시점에 점포 위치에 대한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있어, 가맹점 운영에 반 드시 필요하다고 당사가 판단하여 협의한 결과 가맹점도 이에 동의하면 점포 이전비가 추가 될 수 있습니다.

-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시 조치사항
  -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 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 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 관 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당 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 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 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 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 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 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크레이지 빙수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귀하가 크레이지 빙수에 지급해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양수인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에 필요한 교육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보증금도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운영권 양도에 관한 자세한 절차는 [31]쪽에 나와 있습니다.

####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상호·간판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 내지 제거하여야 하며, 가맹본부가 제공한 설비, 전산시스템 등 영업관련 자산을 가맹본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일정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지급한 계약이행보증금의 정산잔액과 정산서를 받을 때까지는 상호·간판 등의 철거 내지 제거, 영업관리 자산의 반환의무 이행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비용은 계약종료에 책임 있는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귀하가 **크레이지 빙수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 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하는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귀하가 위 표의 거래형태에 강제로 기재된 물품을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 다른 품목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 나) <mark>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mark>

(단위: 원)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크레이지 빙수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용역 ·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 이 수취하는 경제적 이익은 없습니다.

####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1)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2)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 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 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3. 상품 • 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 • 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k 오곡팥빙수 파주영의정 인절미 빙수 딸기가 있는 돼지바 빙수 짜장라면 빙수 쿨피스로 만든 복숭아 후르츠 빙수 당이너마이트 빙수 제주 봄빛 말차 빙수 밤맛에 진심인 바밤바 빙수 첫눈에 바나나 킥 빙수 황금 페레로로쉐 브라우니 빙수 생딸기 딸기우유 빙수 생딸기 출콜릿 퐁듀 빙수 수박 듬뿍빙수 에라모르겠다 4가지 과일 빙수 샤인머스킷 듬뿍 빙수 초코 바나나나나 빙수 새콤달콤 파인'골드'키위 빙수 애플망고 폭탄 빙수 블루베리 폭탄 빙수 들리플베리 빙수 토리플베리 빙수 토리플베리 빙수 축 덮인 오레오 빙수 적 달고나 치즈케익 빙수 지주 품은 티라미수 치즈케익 빙수 공하쉬POP 빙수	왼쪽에 기재된 이외의 제품을 판매할 수 없음 (단, 주류 및 음료는 제외)	1회 위반: 구두 경고 2회 위반: 2회 이상 서면 시정요구 3회 이상 위반: 계약 해지	

귀하가 당사가 승인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 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상기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이외에도 가맹사업의 개선, 고객 니즈의 변화, 경쟁업체의 출현, 시장변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가맹사업 전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으로 기존 메뉴의 변경 또는 추가를 요구할 수 있습 니다.

이 경우 가맹점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못하며 가맹본부가 지정한 상품·용역만을 판매해야 합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고객에 대해 상품・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방수 생태계의 변혁을 일으키는~~ 크레이지 방수!!

거래상대방	상품 • 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경쟁업체	당사가 지정한 상품 · 용역 및 당사 또는	제한된 거래상대방에게	1회 위반: 구두 경고 2회 위반: 2회 이상 서면	
물품공급이 중단된 다른가맹점사업자	당사의 지정 업체로부터 공급받은 물품	무상지원 공급 및 판매 금지	시정요구 3회 이상 위반: 계약 해지	
미성년자	주류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 외에도 판매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 • 용역명	권장가격(단위: 원)	가격 통보 방법	비고
k 오곡팥빙수	13,900		
파주영의정 인절미 빙수	15,500		
딸기가 있는 돼지바 빙수	16,500		
짜장라면 빙수	15,500		
쿨피스로 만든 복숭아 후르츠 빙수	15,500		
당이너마이트 빙수	17,900		
제주 봄빛 말차 빙수	15,500		
밤맛에 진심인 바밤바 빙수	15,500		
첫눈에 바나나 킥 빙수	14,500		
황금 페레로로쉐 브라우니 빙수	16,500		
생딸기 딸기우유 빙수	15,500		지역 및
생딸기 초콜릿 퐁듀 빙수	16,500	변동 시 공지	상권의 특성에 따라 당사와 협의하여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수박 듬뿍빙수	15,500		
에라모르겠다 4가지 과일 빙수	17,500		
샤인머스킷 듬뿍 빙수	15,500		, (2024년 9월
초코 바나나나나 빙수	14,500		<mark>기준</mark> )
새콤달콤 파인'골드'키위 빙수	17,500		
애플망고 폭탄 빙수	15,500		
블루베리 폭탄 빙수	15,500		
트리플베리 빙수	15,500		
눈 덮인 오레오 빙수	15,500		
핵 달고나 치즈케익 빙수	17,000		
진주 품은 티라미수 치즈케익 빙수	16,500		
풍미 가득 아이스 아포가토 빙수	14,500		
칙촉허쉬POP 빙수	15,500		
초코더쿠 브라우니 빙수	15,500		

당사는 시장 상황이나 소비자의 동향 또는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장 적절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소비자 판매가를 정하여 권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권장가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에는 당사가 정한 소정 양식에 의하여 그 취지를 통지하고 당사와 사전협의하여야 합니다.

####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 · 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 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중설인 법중 법제 	가맹본부	계열회사
<b>빙수 / 후르츠 / 크로플 / 생과일/ 주스전문점</b> 등	크레이지 빙수	
을 전문으로 판매 및 외식업종 하는 가맹사업	그네이지 3구	-

#### 2) 영업지역 설정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시/군/구 별로 5개점씩 개설하되	
1만명당 1개점 추가	
점포를 중심으로 반경 1.5킬로미터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행정구역당 5점포	(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단, 특수상권(백화점, 마트, 시장, 지하상가, 공항,	
호텔 등)은 행정구역과 상관없이 별도의	
영업지역으로 인정	

- -영업지역 설정은 가맹계약서상 [별첨1] 영업지역의 표시 기준에 따릅니다.-
  -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1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1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2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	제조정 사이 비새 . 다시 다다티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거토 - 여어되여 변경(이) 자선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
3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부 회신
	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4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	지역 변경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		
	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 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크레이지 빙수'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크레이지 빙수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해당 사항 없음

####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국내 온라인·오프라	인 판매 매출액 비중	
d E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연도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TLIL O⊐LOI早	71EL 0 3L01
	(가맹점 매출액)	(직영점 매출액)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4	100	0	0	0

2) 바로 전 사업연도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4	0	0

####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계약기간	갱신시
년	2년	1년

크레이지 빙수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이며, 가맹계약 갱신시 계약기간은 계약갱신일로부터 1년입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 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D-180 ~ D-90
예→②, 아니오→⑦	2 100 2 3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D-180 ~ D-90
예→④, 아니오→③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D-180 ~ D-90
에→⑤, 아니오→A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	
습니까?	①+15일 이내
	(I)+13일 에테
예→B, 아니오→A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	
니까?	
에→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D 100 D 00
예→B, 아니오→®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D-60일 이전
예→E, 아니오→A	D-00일 역단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	
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	_
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제37조 제1항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제37조 제1항
○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 득을 하지 못한 경우	제37조 제1항
○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 스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제37조 제1항
○ [크레이지 빙수]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제37조 제1항
○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 비용 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 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제37조 제1항

###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 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	약조문
가맹점사업자에게 본 계약에서 정한 물품공급중단 사유가 있는 경우	제38조	제1항
가맹점사업자가 점포의 규모, 대표자 등의 가맹점의 표시에 해당하는 사항을 임의 로 변경하는 경우	제38조	제1항
가맹점사업자가 당사가 허용한 영업표지의 사용범위 외에 서면 동의 없이 영업표 지를 사용하는 경우	제38조	제1항
가맹점사업자가 당사가 보유한 영업표지를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양도한 경우	제38조	제1항
가맹점사업자가 공급품 대금 및 기타 대금의 약정한 납입기일을 경과하는 경우	제38조	제1항
가맹점사업자가 개점 이후의 교육 참석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제38조	제1항
가맹점사업자가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38조	제1항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제3자 명의로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제38조	제1항
가맹점사업자가 관리·감독 기준에 의한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38조	제1항
가맹점사업자가 승인받지 않은 제품을 판매하거나 통일성 유지를 위한 요구 품목을 사용하지 않아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저해하는 경우	제38조	제1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 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즉시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ㅇ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제38조 제2항
o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제38조 제2항
o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 할 수 없게 된 경우	제38조 제2항
<ul> <li>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li> <li>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li> <li>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li> </ul>	
o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 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38조 제2항
o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경우는 제외한다.	제38조 제2항
ㅇ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제38조 제2항
o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ㅇ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제38조 제2항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계약 갱신시 변경내용이 있을 경우 계약기간 만료 180 일에서 90 일 사이에 계약 의 변경 조건을 통지하고 재계약 여부를 묻게 됩니다.

-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 수할 것	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문의: 가맹사업팀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양수인은 계약이행보증금(금 일백만원정) 및 교육비 (금 오백오십만원정(부가세포함)를 지 불한 후 교육.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원할 경우 당사는 양수인과 신규 가맹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규가맹계약일지라도 가맹점 모집비용, 개점행사비 등이 일반적인 신규가맹계약보다 적 게 소요될 경우에는 비용 소요액에 상응하는 가맹금을 당사와 협의하여 지급하실 수 있 습니다.

	금액(천원, VAT포함)			
구분	신규 가입자	기존 가맹점 양수자		
	*갱신요구기간(10년)을 새롭게 부여	*잔여 계약(갱신요구)기간을		
	받고자 하는 경우	인정받는 계약		
합계	15,300 (부가세 포함)	6,500 (부가세 포함)		
가맹비	8,800	0		
교육비	5,500	5,500		
보증금	1,000	1,000		

###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 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할 경우에는 당사에 사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기타 의무사항
상속	상속인 사후통지시	모든 권리의무	본부에 서면통보 → 본부 승인 → 교육 수료	교육수료 및 교육비 지급
대리행사	불가능	-		
업무위탁	불가능	-		

####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기간 동안 영업지역 내에서 귀하가 크레이지 빙수와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당사의 영업, 교육, 서비스방식		문의: 가맹사업팀
과 동일한 빙수류 관련 사업 ,	당사는 영업비밀 및 상표보호를 위하여	02-6053-1299
배달 또는 포장을 전문으로 판	겸업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ᄱᄓᄀᆀ
매하는 외식업종		(비공개)

가맹점사업자는 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포함한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인접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신 및 제 3 자로 하여금 당사의 허락 없이 크레이지 빙수와 동종업종(타사 가맹점, 독립점포 및 가맹본부 경영을 포함한다)을 경영 하여서는 안됩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계약기간 중 가맹점 시설 내에서 크레이지 빙수 이외의 영업활동 및 사업체 운영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계약종료 후 당사의 허락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명의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크레이지 빙수의 영업비밀이 침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특히 가맹계약 종료 후 1년간 해당점포 및 해당점포 기준 반경 1.5킬로미터 이내에

는 당사의 동의없이 크레이지 빙수와 동종업종 (타사 가맹점, 독립점포 및 가맹본부 경영을 포함한다)을 경영 하여서는 안됩니다.

###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크레이지 빙수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18:00~01:30		문의: 가맹사업팀
단, 영업지역 및 매장상황에	최소 주6일, 월25일 이상	02-6053-1299
따라 변동 될수 있음.		(비공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의거 오전 0시 또는 1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매출이 영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저조하여 3개월간 영업손실이 발생하거나, 질병의 발생과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팀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개인 사정 등으로 영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하거나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팀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장 종업원수	직접 근무 여부	대체 가능 인력	비고
1명 이상	직접 근무	다시이 교으은 이스하 자	점주의 부재시
15 46	96 TT	당사의 교육을 이수한 자	가맹본부에 사전 통보

##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ㆍ감독 항목	감독 절차	빈도 및 시기	담당팀	비고
	담당자 매장 방문 → 청결도 확인 →		본사	
매장 청결(4항목)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1회/월		
	서명 → 완료		가맹사업팀	
치저ㄷ/ㄷ하모\	담당자 매장 암행방문 → 주문 →	1 시 /의	본사	
친절도(5항목)	친절도 확인 → 관리표 작성 → 완료	1회/월	가맹사업팀	
	담당자 매장 방문 → 품질 확인 →		본사	
품질 관리(7항목)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1회/월		
	서명 → 완료		가맹사업팀	

###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크레이지 빙수 영업표지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광고 성격			부담비율	분담 절차	비고
ᅮᇎ	9T 94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군급 결사	미끄
	상품광고	광고비의 50%	광고비 50% 중 가맹점 총매출액 비율 따라 산정	· 광고 계획 공고 → 가맹점의	대중매체 광고
광고 전체 행사	상품광고+ 가맹점모집 광고	광고비의 75%	광고비 25% 중 가맹점 총매출액 비율 따라 산정	광고참여 여부 결정 → 가맹점부담액 제시(명세서)	명절, Day 이벤트 행사 (전국 행사)
	가맹점 모집광고	전액 부담	없음		(67 671)
판촉행사	할인행사	할인금액 (소비자가) 50%	할인금액 (소비자가) 50%	행사계획 공고 → 가맹점부담액 제시 → 가맹점의 행사 참여 결정 → 행사 시행 → 종료 후 최종분담금 확정	판촉행사 동의 절차를 거친 후 전체 가맹점 사업자의 70% 이상의 동의시
	증정행사	증정상품 출하가	증정상품 출하가 50%	"	n

		50%			
	팜플렛 등 제작	판촉물 제작비용 50%	판촉물 제작비용 50%	п	п
	기타 개별행사	행사에	따라 유동적	"	"
할인카드 • 멤버십 제휴서비스	제휴행사	서비스로 인한 월 할인금액의 50%	서비스로 인한 월 할인금액의 50%	(가맹점) 월 할인금액 제시 → (가맹본부) 자료제출일로 부터 10일 이내 부담액 송금	할인서비스 등의 종료시까지

※ 위 내역은 당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전국단위의 광고일 경우 가맹점부담액은 광고비 중 일부를 광고시행 직전 분기의 각 가맹점사업자의 총매출액 비율에 따라 분담합니다. 지역 광고일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부담액 부분을 분담합니다.

####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 • 판촉 활동

귀하는 귀하의 비용으로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판촉 등을 개별적으로 자기 지역 내에서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영업표지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전에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당사의 시스템, 매뉴얼, 제조, 판매, 영업, 계약 및 점포의 운영관리 등에 관하여 제3자가 인지할 경우에 당사의 영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법이나 노하우 및 이들이 수록된 운영교범 기타 자료를 포함합니다.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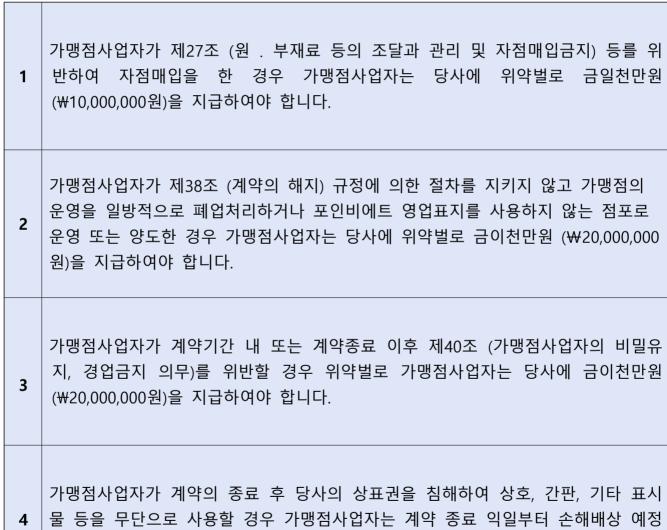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자료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가맹점사업자 자신의 직원에 의한 의무위반에 대하여도 공동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 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 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 의 예정으로서 다음과 같이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 다.



- 액으로 1일 금삼십만원 (₩300,000원)씩 당사에 지불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이에 대한 채권 채무의 관계를 계약이행보증금으로 정산하고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손해의 비용은 법무비용을 포함하여 당사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의 배 5 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 또는 그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맹본부에게 본 계약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47일 내외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D-47	
사업 설명ㆍ상담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D-46~45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입지선정 -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 개설 승인	D-34~31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	D-30	
가맹금 예치	- 우리은행에 가맹금 예치	D-29(1일)	
점포실측/설계	- 투자비 산출	D-27~25(3일)	
실내외 공사착수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D-24(1일)	
인테리어 공사	- 공사 실시	D-24~5(20일)	
교육 실시	- 점포운영교육 실시	D-7~4(3일)	
점포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D-day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 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W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개선	가맹본부 부담	가맹본부 부담	TI그저+L	비용부담	ш¬
사유	비용항목	비용비율	지급절차	제외사유	비고
ㅇ점포의 시설,	ㅇ간판교체 비용	ㅇ점포의 확장	ㅇ가맹점사업자	o점포환경개선	
장비, 인테리어	ㅇ인테리어 공사	또는 이전을	의 비용 청구	일로부터 3년	
등의 노후화가	비용(장비·집기	수반하지 않는	(공사계약서	이내에 가맹본	
객관적으로 인	의 교체비용을	점포환경개선	등 공사비용을	부의 책임없는	
정되는 경우	제외한 실내건	: 20%	증빙할 수 있	사유로 계약이	
ㅇ위생이나 안전	축공사에 소요	ㅇ점포의 확장	는 서류 첨부)	종 료 ( 계 약 의	
의 결함으로	되는 일체의	또는 이전을	→ 90일 이내	해지·영업양도	
인하여 가맹사	비용. 단, 가맹	수반하는 점포	에 가맹본부	포함)되는 경	
업의 통일성을	사업의 통일성	환경개선 :	부담액을 가맹	우 가맹본부	
유지하기 어렵	과 무관하게	40%	점사업자에게	부담액 중 잔	
거나 정상적인	가맹점사업자		지급	여기간에 비례	
영업에 현저한	가 추가 공사		(단, 가맹본부와	하는 부담액은	
지장을 주는	를 실시함에		가맹점사업자간	지급하지 아니	
경우	따라 소요되는		별도의 합의가	하거나 이미	
	비용은 제외)		있는 경우 1년	지급한 경우에	
			의 범위내에서	는 환수 가능	
			분할지급 가		
			능)		
			o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 정한 자를 통 하여 점포환경 개선을 한 경 우에는 점포환 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 부 부담액을 지급 <분할지급 시
하여 점포환경 개선을 한 경 우에는 점포환 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 부 부담액을 지급 <분할지급 시
개선을 한 경 우에는 점포환 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 부 부담액을 지급 <분할지급 시
우에는 점포환 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 부 부담액을 지급 <분할지급 시
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 부 부담액을 지급 <분할지급 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 부 부담액을 지급 <분할지급 시
이내에 가맹본 부 부담액을 지급 <분할지급 시
부 부담액을 지급 <분할지급 시
지급 <분할지급 시
<분할지급 시
지+I
절차>
o 가맹점사업자
의 비용 청구
( 공 사 계 약 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
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 3사에 열서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액을 분할 지
급
(1차 : 청구일
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
액의 30%, 2
차 : 1차 지급
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
액의 30%, 3
차 : 2차 지급
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
액의 40%)

#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해당사항 없습니다.

####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고
가맹본부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30]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본부 부담	문의: 가맹사업팀 02-6053-1299 (비공개)
가맹점사업 자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 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 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 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 도 후 [30]일 이내에 가맹본 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 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 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점 부담 (기맹금에 포함된 통상의 경영지도 비용을 초과한 부분에 한함)	문의: 가맹사업팀 02-6053-1299 (비공개)

# 4. 신용 제공 등 내역

해당사항 없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당사는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지원제도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 때 . 교육 . 훈련에 대한 설명

#### 1. 교육 • 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크레이지 빙수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비고
개점 전 교육	회사 소개 음식 가공 POS 사용, 입금 방법 등	-개별교육 -실습교육	개점 전까지	필수 교육
개점 후 특별교육	신메뉴 가공 종업원 관리 실무 등	-집단교육 -실습교육	별도 통보	필요시 수시

####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크레이지 빙수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최소시간	비용(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비고
신규교육+개점세팅비 (양수포함)	5일	5,500	최초 계약시 이수
연장/보수특별교육	1~2일	0~550	필요 또는 요청시

#### 3.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계약 당사자가 원하여 당사자 외 직원도 같이 교육을 받게 되면 인원 추가에 따라 비용도 추가됩니다.

#### 4. 교육・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귀하는 개점 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개점을 할 수 없으며, 점포의 관리자로 근무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개점 이후 당사가 정하는 필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기간 만료 후 갱신이 거절될 수 있고, 물품공급 중단 및 가맹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으니 필히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sup>\*2024</sup>년 9월 30일 ㈜브랜드라이브코리아가 종전 가맹본사의 가맹사업을 양수함에 따라 이전 가맹본부가 운영하였던 직영점은 가맹점으로 전환되었음.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 년, 개월)

2024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산정기준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4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평균 매출액 산정기준		

<sup>\*</sup> 직영점이 없습니다.

####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경우에는 당사(02-537-8296)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010)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정보공개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별첨 1. 정보공개서/인근가맹점 현황/가맹계약서 제공확인서 (가맹본사보관용)

▶아래 빈칸에 가맹희망자 본인이 직접 자필로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가맹희망자 성명	(인)	전화번호	
가맹희망자 주소			
수령일시	년 월	일 (오전/오루	호) 시
수령장소			
수령확인	아래 빈칸에 "정보공개서/인근가맹점 현황문서/가맹계약서를 수령하였습니다." 라고 작성해 주세요.		

▶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가까운 가맹점 10개의 일반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 중인 가맹점이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내의 가맹점 전체 현황을 제공하며, 장래점포예정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정되는 즉시 제공하겠습니다.

구분	매장명	소재지	연락처
1			
2			
3			
4			
5			
6			
7			
8			
9			
	·맹계약서 내용에 기업의 영업비밀이 들여 정할 경우 관계법령에 의하여 처벌받을 :		나 무단 도용 및

 20 년
 월
 일

 가맹희망자
 (인)

### 별첨 2. 정보공개서/인근가맹점 현황/가맹계약서 제공확인서 (가맹점사업자용)

▶아래 빈칸에 가맹희망자 본인이 직접 자필로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가맹희망자 성명	(인)	전화번호	
가맹희망자 주소			
수령일시	년 월	일 (오전/오후	) A
수령장소			
수령확인	아래 빈칸에 "정보공개서/인근가명	점 현황문서/가명 작성해 주세요.	생계약서를 수령하였습니다."라고 

▶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가까운 가맹점 10개의 일반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 중인 가맹점이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내의 가맹점 전체 현황을 제공하며, 장래점포예정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정되는 즉시 제공하겠습니다.

구분	매장명	소재지	연락처
1			
2			
3			
4			
5			
6			
7			
8			
9			
10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내용에 기업의 영업비밀이 들어있어 제3자에게 유포하거나 무단 도용 및임의로 수정할 경우 관계법령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가맹본부 ㈜ 브랜드라이브코리아 대표 (인)

#### 별첨 3. 가맹금 예치신청서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2.5.7>

# 가맹금예치신청서

※ 아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상호(가맹점명)				
신청인	성명(대표자)				
	주소(사무소)			전화번호	
가맹본부		<mark>브랜드라이브코리아</mark> 승 우			
	주소(사무소)서울특별	별시 성동구 무학봉16길	26-9, 1층(행당동)	전화번호	1551-2242
예치가맹금	₩	(금	원 정)		
신청인의 계					
좌					
가맹본부의 계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5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7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예치가맹금을 예치해 줄 것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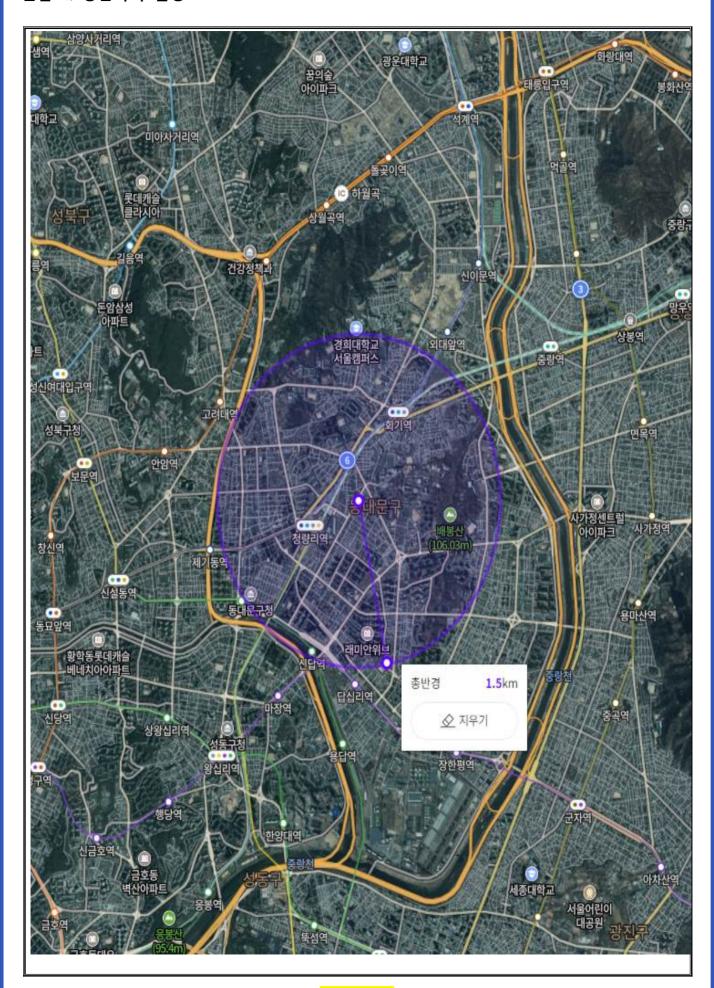
예치기관의 장 (지점장)

#### 예치기관이 주의해야 할 사항

- 1. 예치기관의 장은 예치가맹금을 예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예치신청인에게 예치증서를 내주어야 합니다.
- 2. 예치기관의 장은 예치가맹금의 예치일부터 7일 이내에 예치가맹금 예치증서를 첨부하여 예치가맹금을 예치한 시실을 가맹본부에 통지해야 합니다.
- 3. 예치기관의 장은 예치가맹금의 예치 및 그 관리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관리수수료로서 예치가맹금의 수령인이 수령할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m²]

#### 별첨 4. 영업지역 설정



# 2024년 재무제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 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 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